

2026년도 상반기 광주교통공사 공무직 대체인력풀(Pool) 모집 최종합격자 공고

광주교통공사 공무직 대체인력풀(Pool) 모집에 따른 최종합격자 및 임용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광주교통공사 사장

1 대체인력풀 최종합격자

- 공사 온라인 채용 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grtc>) 합격자발표 메뉴에서 개인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확인 불가)

2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기 간 : 2026.03.09.(월) 14:00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채용 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grtc>) 합격자 발표 페이지
- 제출서류 : 총 5종(각 1부)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기본증명서 1부 (최종합격자 공고일('26.03.06.)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서식 활용 (원본 서명 후 스캔본 및 식별가능한 이미지파일)
3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4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5	서약서	

- ※ 원본 서류는 임용 시 제출하므로, 분실되지 않도록 반드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만 첨부 가능합니다. 여러 파일일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하거나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용관련 안내사항

- 가.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 직종별 대체인력풀(Pool)에 등록되며, 공무원의 출산 휴가, 3주 이상 휴직·병가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우선순위에 따라 임용·배치될 예정입니다.
- 나. 대체인력 투입사유 발생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임용에 필요한 세부 제출서류 및 일정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다. 대체인력풀(Pool)에 등록된 자라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대체인력 투입 대상자는 임용 이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수료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 이수자는 임용이 제한됩니다.
- 마. 이외 대체인력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2026년도 상반기 광주교통공사 공무원 대체인력풀(Pool) 모집공고」(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6-7호) 1. 대체인력풀(Pool) 운영 안내, 9. 근로조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 서식5>을 활용하여 “recruit@grtc.co.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교통공사 총무팀(☎ 062-604-806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광주교통공사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각 항목의 동의, 미동의란에 '0'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동의 0 미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등록기준지주소	직원 채용 관리 (본인확인, 지원자격확인, 채용 전형, 합격 안내 등)	채용기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후 관리를 위한 필요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②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직원 채용 관리	채용기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후 관리를 위한 필요 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③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직원 채용 관리	채용기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후 관리를 위한 필요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④ **결격사유 조회, 건강검진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결격사유 조회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검찰청, 병무청 등) 근무경력 공공기관, 건강검진 시행기관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업무처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후 관리를 위한 필요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⑤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광주교통공사의 직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광주교통공사 사장 귀중

[첨부 2]

결격사유 등 확인을 위한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치료감호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 제266조, 「정치자금법」 제57조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⑫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⑬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용(합격)취소 됨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첨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첨부 4]

서 약 서

【2026년 상반기 광주교통공사 대체인력풀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1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합격취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채용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부정행위 등 적발시 합격의 취소와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성명 :

(서 명)

광주교통공사사장 귀하

[첨부 5]

광주교통공사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이의신청 내용
<p>신청기한 : 2026.3.11.(수) 12:00까지 제출방법 : recruit@grtc.co.kr</p> <p>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만 작성바랍니다.- 문의 및 질의사항은 채용 Q&A 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교통공사 사장 귀하